

2022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연수구 송도동 94-3 (업무시설(사무소), 판매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심의일자	2022. 2. 24.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대신자산신탁(주)		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			
	지 번	94-3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5,304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중심상업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357.3698㎡	건폐율	63.30%	층수 지하 : -6층 / 지상 : 27층
	주 용 도	업무시설(사무소) 판매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동
	최고높이	118.4m	용적률	764.67%	연면적 합계 63,392.1082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특수구조물이므로 시공 시 기술자의 감리협력을 받으시기 바람.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
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

2022년 제2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중구 운북동 1367-1번지 (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2. 2. 24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금아산업(주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				
	지 번	1367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24,882.3㎡	용도지역(지구,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854.7898㎡	건폐율	15.09%	층수 지하 : -1층 / 지상 : 34층
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 부대복리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3동
	최고높이	98.2m	용적률	149.81%	연면적 합계 53,780.0834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조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 ○ 설계자의 전이층 하부 서포트 설치계획에 대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함. 단, 향후 구조현장컨설팅 시에 전이층 서포트 설치 시에 기초부까지 전체적으로 서포트를 설치하여 전이층 하부 슬래브에 하중이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람. ○ 아파트 단지 내에 진입 가능한 소방차량 하중을 근거로 산정하시기 바람. ○ 감쇠시스템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내진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면 감쇠 시스템 설치 전·후를 비교하여 제시하시기 바람. ○ Peer Review 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람. (이희원 위원) ○ 특수구조물이므로 시공 시 건축구조 기술사의 감리협력을 받으시기 바람.			
	(토질)분야	○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.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	
	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